



혼전합의서의 법적 유효성

# 혼인 후 유효와 무효의 시비 피하기 위한 제반 절차와 형식

혼전합의서 작성이 법이 요구하는 제반 절차와 형식에 한 치도 어긋남이 없어야 비로소 그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이다. 혼전합의서의 법적 유효성을 위해서 가주 가정법은 확인해야 할 사항들의 철저한 준수를 명시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3월호에서 결혼 전 배우자 사이에 개인의 재산, 부채, 재정 관계를 개인이 원하는 대로 규정하는 합의서인 Premarital Agreement(혼전합의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한 바 있다. 혼전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캘리포니아 주 가정법이 규정하는 부부 공동 재산권의 적용을 피하고 개인의 재산을 혼인 이후에도 개인 사유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재혼이나 한쪽이 재산이 많은 경우에 사용된다. 하지만, 결혼 전에 무조건

혼전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혼전합의서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다. 도리어 결혼 전에 만든 혼전합의서를 혼인 후에 무효화하려는 소송이 빈번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혼전합의서 작성이 법이 요구하는 제반 절차와 형식에 한 치도 어긋남이 없어야 비로소 그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이지, 적당히 작성한 혼전합의서는 훗날 의뢰인들의 표현대로 “청천벽력도 유분수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분명히 서로 합의하에 사인까지 한 서류가 무효라니, 무슨 이런 법이 다 있소?”라는 경우를 초래한다.

혼전합의서의 법적 유효성을 위해서 가주 가정법은 다음 사항의 철저한 준수를 명시하고 있다.

첫째, 합의서는 어느 한쪽의 강요나 부당한 압력 없이 자발적으로 동의, 사인돼야 한다.

둘째, 합의서의 일부로 개인은 상대방에게 개인의 재산·부채·재정 관계를 세세히 명시, 공개해야 한다.

셋째, 개인의 재산·부채·재정 관계에 대해 상대방이 전혀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하에, 개인이 그의 재정 관계를 미비하게 공개했을 경우, 그에 근거하여 동의·작성된 합의서는 무효이다.

넷째, 합의서를 사인하기 이전에 양 당사자는 반드시 각자 자신의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하여 합의서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변호사 선임을 포기, 혹은 거부하는 개인은 그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 표명해야 한다.

다섯째, 합의서 작성이 완료돼 상대방 배우자에게 전달



신혜원(가정법 전문 변호사)

될 경우, 배우자가 그의 변호사와 충분히 검토하여 사인할 시기를 적어도 7일 이상 허용해야 한다. 7일 이전에 사인된 합의서는 무효이다.

여섯째, 만약 상대방 배우자가 끝까지 그의 변호사를 개별적으로 선임할 것을 포기, 혹은 거부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해 표명할 경우, 합의서를 작성한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합의서의 내용과 그 효력, 배우자가 합의서에 동의·사인함으로써 그가 상실하게 되는 법적 권리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 이 설명서를 받은 배우자는 설명서 수령 인정서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때 변호인이 없는 배우자가 영어에 능통하지 못한 경우 합의서의 내용과 이에 수반되는 보충설명서 배우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설명서가 전달돼야 한다.

일곱째, 어떠한 경우에도 사기 행각, 허위 진술, 심리적 압력 행사 등에 의해 사인된 합의서는 무효이다.

한국인의 정서상, 백년가약을 맺으면서 네 것 내 것 따지는 혼전합의서의 작성을 제안하는 일조차도 진땀 뻘 일이다. 더구나 혼인 후 유효나 무효나 시비 가릴 일 피하려고 이렇게 준수해야 할 법적 규정이 많은 혼전합의서. 하지만 법은 시대변천에 맞추어 끊임없이 개정, 보강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혼전합의서 작성에 관한 법규가 이리도 까다롭지는 않았다. 하지만 매일 가정법원에서 일어나는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결혼식장에서 신부 입장 30분 전에 가져와서 사인하라는 거예요.” “장인이름이 발길로 한 대 걸기면서 사인 안 하면 팔 못 준다는 거예요.” “결혼식 하려고 LA 공항에 도착하니 무슨 꼬부랑 글씨 들어있으면서 혼인 전에 사인해야 된다고 해서, 혼인신고서인 줄 알고 사인했지요.” “예비 신랑 신부 파티한다고 술을 퍼주는 대로 마셨는데, 다음날 내가 재산포기 각서에 사인을 했다는군요.”

자, 이것이 현실이라면 까다로운 법규 나무라기는 엄치 없는 일인 듯싶다.

문의 213-251-5401